

#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증개정조례(안)

## 심사 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5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

제1차 건설위원회 (1993. 12. 2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)

가. 제안이유

내무부소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특별회계를 폐지  
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제명 및 목적의 특별회계 내용 삭제

○ 조례증 제3조(세입), 제4조(세출), 제8조(예비비), 제9조(준용) 및 특별회계의  
관직지정을 삭제

○ 주택개량사업 대출금리 인하 조정 (8%→ 6.5%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내무부 소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특별회계 폐지 및 관직 지정의 삭제, 주택개량사업 대출금리를 인하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### 5. 토론요지 : 없 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5인 만장일치)

### 7. 소수의견요지 : 없 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## 9. 첨부서류

- 가.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증 개정조례(안) 1부.
- 나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